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[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]

1. 발 의 자 : 이종갑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이 조례의 상위법인 「동물보호법」(시행 2023. 4. 27.)의 전부개정
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, 동물의 생명 보호, 복지
증진 등 충청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
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동물복지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나. 동물복지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5조 ~ 안 제7조)

다. 등록대상동물 등록, 관리 등(안 제8조 ~ 안 제12조)

라.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등(안 제13조 ~ 안 제15조)

마. 수수료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안배경

- 현행 조례는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물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10일 제정·시행되었음
-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,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되어 2023년 4월 27부터 시행중에 있음
- 따라서 법의 전부개정 사항 반영과 사회적 이슈 및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개선·보완하는 등 충북도 동물보호 정책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임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, 법의 체계와 구성을 따랐음
- **안 제3조**는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노력하고 관련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
- **안 제4조**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의 포함사항을 구체화하고,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- **안 제5조부터 안 제7조**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누락되었던 동물복지위원회 규정을 신설함

-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,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
또한, 등록대상동물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,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사육·관리에 관한 조항은 실익이 없어 삭제함
- 안 제12조는 현행 동물포획에서 동물의 보호·관리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, 학대 동물 구조, 격리, 보호조치 조항을 신설함
- 안 제13조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, 그 밖에 지정 절차 및 관련 별표 등을 정비함
- 안 제15조는 현행 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서 동물의 기증·분양으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,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 및 타당성)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동물 학대방지, 동물 생명보호, 복지증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고, 그 내용과 절차, 정책의 방향이 타당함
- (법적합성)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